

상생 e-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 장래채권 양도방식용)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상생 e-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 - 장래채권 양도방식용)</p> <p>제 1 조 (목적) ~ 제 3 조 (업무의 방법) (기재생략)</p> <p>제 4 조 (기본 협약사항)</p> <p>① (기재생략)</p> <p>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p> <p>1.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2.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③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p> <p>1.~2. (기재생략)</p> <p>3.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p>	<p>상생 e-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 (구매기업용 - 장래채권 양도방식용)</p> <p>제 1 조 (목적) ~ 제 3 조 (업무의 방법) (현행과 같음)</p> <p>제 4 조 (기본 협약사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p> <p>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p> <p><삭제></p> <p>③ (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p> <p>1.~2. (현행과 같음)</p> <p>3.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p>	<p>호 번호 삭제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p> <p>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p>

<p>④~⑧ (기재생략)</p> <p>⑨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⑩~⑫(기재생략)</p> <p>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기재생략)</p>	<p>④~⑧ (현행과 같음)</p> <p>⑨ (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p> <p>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전자외담대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통보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p> <p>⑩~⑫(기재생략)</p> <p>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현행과 같음)</p>	<p>른 문구 수정</p> <p>용어 수정</p>
--	---	-----------------------------

2. 개정 시행일: 2019년 7월 4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